

문서번호	생활보장과-1824
결재일자	2015.1.2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★주무관	지할주거담당	생활보장과장	교육문화복지과장	부구청장	구청장
심규철	이상월	심진숙	도일환	김병환	01/20 代 김병환
협 조	<p>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무보좌관 윤정배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복지정책과장 대이용철 홍보전산과장 권용대</p>				



2015년도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계획

2015. 1.

교육문화복지국
생활보장과

2015년도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계획

생활이 어려운 우리구 대학생 및 입학예정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I

사업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16조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」 제23조~제27조

II

사업 개요

① 지원대상

- 성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과 자녀·특기생으로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

② 지원현황

연도	지원인원	1인당 최대 지원액	총 지원액
2014	37명	1,750천원	62,100천원
2013	31명	2,300천원	64,590천원
2012	32명	2,300천원	60,769천원
2011	22명	3,000천원	56,064천원

③ 2015년 지원규모 : 52,900천원

- 대상인원 : 23명
- 지원내용 : 1인당 최대 2,300천원(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)
 - 등록금 범위 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(기타징수금 미포함)

④ 신청기간 : 2015. 1. 22(목) ~ 2. 6(금)

※ 토요일, 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

⑤ 신청장소 : 주소지 동주민센터

Ⅲ 예산 및 재원

① 소요예산 : 54,162천원

- 장학금 : 52,900천원(23명×2,300천원)
- 위원수당 : 210천원(3명×70,000천원)
- 행사비 : 1,052천원(장학증서 및 현수막 등 제작)

② 사업재원

- 「자활, 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」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자금
 -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3 제1항에 의거 적립기금의 연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장학금 지급
- 2015년 기금현황 : 2,203,439천원
 - 전년도 이월금(2,149,277천원)+당해연도 이자예상액(54,162천원)

Ⅳ 추진계획

① 장학금심사위원회 구성·운영

- 설치근거
 -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7조의6
- 설치목적
 - 공정한 심의를 통한 장학금 지원
- 장학금심사위원회 위원현황
 - 임기 2년, 의원구성(당연직 2명, 위촉직 3명)

연번	직책	성명	직업	임기	비고
1	위원장	김병환	부구청장	-	당연직
2	부위원장	도일환	교육문화복지국장	-	
3	위원	김태수	구의원	14.10.6~16.10.5	위촉직
4	위원	남기철	동덕여대 사회학과 교수	14.10.6~16.10.5	
5	위원	최준기	성북지역자활센터장	14.10.6~16.10.5	

○ 2015년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자금 심사위원회 개최

- 개최일시 : 2015. 2. 17(화) 14:00
- 장 소 : 부구청장실
- 안 건 : 저소득주민 대학 장학생 선발
- 심사대상 : 장학금 신청자 중 23명 선발

② 장학생 선발심사

- 1차 서류심사
 - 기본요건 및 성적요건 등 신청자격 서류 심사
- 2차 심사위원 심의
 - 서류심사 통과자를 '장학금 지급대상 선정평가표(별지4)'에 의거 점수산정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(단, 특기생의 경우 별도로 3명 한도내 선발)
- 선발일정
 - 공고 및 신청서 접수 : 1. 22(목) ~ 2. 6(금)
 - 1차 구비서류 검토 및 심사 : 2. 9(월) ~ 2. 12(목)
 - 장학금심사위원회 심의·의결 : 2. 17(화)
 - 장학금 수여 : 2. 26(목)

③ 장학금 수혜자 봉사활동

-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생 멘토로 저소득 초·중·고생에게 상담 및 학습지도 등 연15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시
 - ※ 봉사활동 수행시 1일 5천원 실비(교통비) 지급

V

신청대상 및 구비서류

1 신청대상

- 성북구에 1년이상 거주하는 저소득구민과 자녀 및 특기생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다음의 기본요건 및 성적요건을 갖춘 사람

기 본 요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각종법규에 의거 차상위계층(최저생계소득 120%이하)으로 분류되어 복지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●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● 공공기관에서 주최한 이공계분야와 예·체능계 분야의 전국규모 이상 국내 경시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해당학교장(학과장)의 추천을 받은 사람
성 적 기 준 요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신입생 : 수능 4개영역(언어, 수리, 외국어(영어), 기타[탐구 및 제2외국어]) 중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이내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/2 이상이 6등급 이내● 재학생 :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※ 등록장애인(학생 본인)의 경우 70점 이상

2 신청제외 대상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수혜받고 있는 사람 (이중지원 불가)
-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대학(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)에 재학(입학)하는 사람은 제외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으로 제외

3 구비서류

-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자금 신청서
-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보서
-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
-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자금 수혜대상 추천서
 - 저소득주민은 동장, 특기생은 학교장(학과장)

-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자금 신청 서약서
- 성적증명서(직전학기)
 -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(한국교육과정평가원), 고교 성적표 사본 1부
- 통장사본(장학금 수령용)

VI 행정사항

부서 협조사항

관련부서	협조사항
홍보전산과	공고 및 구청홈페이지 게재
동주민센터	장학금 신청 접수 및 수혜대상 추천

- 붙임 1.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자금 신청서 1부.
2.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자금 수혜대상 추천서 1부.
3.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자금 신청 서약서 1부.
4. 선정평가표 1부.
5. 저소득주민 장학생 선발공고(안) 1부. 끝.